

## 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(안)

충청북도 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(안)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1조 중 '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'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(다만, 2급 내지 5급의 경우)를 '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'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(다만, 3급 내지 5급의 경우)로 한다.

제2조 제1항 중 '상이군경이'를 '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가'로 한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면제신청)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관할 시장·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장·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.

② 시장·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③(적용시한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.

[별지]

등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표

| 급 수               | 분 류 번 호  |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3급                | 5, 13, 22, 23, 24, 27, 31, 72, 78, 81, 83, 86, 89, 503   |   |
| 4급                | 108, 109, 111, 112, 113, 504   |   |
| 5급                | 25, 26, 28, 29, 41, 73, 77, 92, 505  |   |
| 6급<br>(복합<br>호수자) | 1항   | 35, 36, 47, 48, 115, 116, 117, 119, 120, 121, 122,<br>125, 126, 127, 129, 130, 131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| 2항   | 16, 30, 32, 37, 39, 40, 44, 49, 52, 53, 54, 57, 58,<br>59, 60, 64, 65, 67, 69, 70, 74, 75, 88 |
| 비 고               | 다만, 분류번호 503, 504, 505호 및 위에서 지정되지 않은<br>3급 내지 5급의 호수자는 6급 1항 및 2항에 정한 상하지<br>계통호수와 복합된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. |   |